

경력경쟁채용 등의 계급부여 기준표 (제4조제3항 관련)

직무별 임용 예정계급	일반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판사· 검사	공공 기관	법인·기 업체(100 인 이상)	임용 예정직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포함)	초·중· 고교 그 밖 의 학교				
특정직 2급	2급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 무원	대령 3년 이상	치안감	소 방 정 감	교 수 (3년 이상)		9호봉 이상	이사 (3년 이상)		11년 이상 경력자
특정직 3급	3급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 무원	대령 3년 미만 중령 4년 이상	경무관	소방감	교수		6호봉 이상	이사	이사 (3년 이상)	8년 이상 경력자
특정직 4급	4급	중령 4년 미만 소령 3년 이상	총경	소방정	부교수	24호봉 이상	4호봉 이상	부장	이사	5년 이상 경력자
특정직 5급	5급	소령 3년 미만 대위 3년 이상	경정	소방령	조교수	16호봉 이상		과장 (차장)	부장	
특정직 6급일 반직 6급	6급	대위 3년 미만 중위 3년 이상	경감 경위	소방경 소방위	전임 강사	12호봉 이상		계장 (대리)	과장 (차장)	
특정직 7급일 반직 7급	7급	중위 3년 미만 소위·준위·상사 3년 이상	경사	소방장		11호봉 이하		평사원 (3년 이상)	계장 (대리)	
특정직 8급일 반직 8급	8급	상사 3년 미만 중 사	경장	소방교				평사원	평사원 (3년 이상)	
특정직 9급일 반직 9급	9급	하사	순경	소방사				평사원 수습 사원	평사원	

비고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2급 또는 3급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계급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력 및 해당 공무원이 재직할 직위의 근관성과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